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463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2160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46341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은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1.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32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07. 8.경 D에 대한 2005. 4. 7. 및 2005. 8. 30.자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 일체를 F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09. 9. 24. G 유한회사에 D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나. G 유한회사는 D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5. “D은 G 유한회사에게 89,565,610원 및 그 중 41,757,25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2. 7. 26.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3292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승계집행문이 2020. 9. 3.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의 배우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1.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D과 그 자녀들인 I, J, 피고가 있고, 그 법정상속분은 D이 3/9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2/9이다.

마. D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3239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이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6. 5. 20.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4. 3.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균 L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권이 존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3/9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D의 자녀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K조합 상하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2억 5,500만 원(2016. 5. 25.자 1억 6,000만 원, 2017. 4. 6.자 9,500만 원), 경기 가평군 M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 망인이 망인의 동생 N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6,400만 원 등 합계 419,000,000원의 상속채무가 있어 결국 상속채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합계액 361,560,200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는 대신 망인의 위 대출금과 이자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가 상속채무를 전부 상속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이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실상 D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위와 같이 인수하거나 상속한 금전채무는 D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에 반영할 것이 아니다. 한편, ①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2016. 5. 25.자 1억 6,000만 원, 2017. 4. 6.자 9,500만 원, 다만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6.자 채무는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최초 대출금액인 9,500만 원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위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 가평군 M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 부분은 그에 대한 전세권이 2019. 12.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21. 1. 8.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 명의의 대출금채무 6,400만 원도 이를 망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61,560,200원에는 가평군 O 외 3필지 상 건물 중 P동(주택 148.87㎡)에 대한 가격은 포함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개별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한 피고 주장의 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위 채무 합계액 2억 5,500만 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설령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분의 시가보다 적은 금액의 채무 면제를 대가로 이전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피고는 N가 2019. 12. 20.경 망인이 부담하던 경기 가평군 M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에 포함시키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채무액 합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결국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32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목록]

1.

[건물의 표시]

경기 가평군 [도로명주소] 경기 가평군

벽돌구조 아스팔트상층지붕 단층주택

1층 196.79 m²

[토지의 표시]

경기 가평군

대

449 m²

[토지의 표시]

경기 가평군

대

89 m²

2.

[건물의 표시]

경기 가평군 동[도로명주소] 경기 가평군

벽돌구조 경사지붕 단층주택

1층 148.87 m²

[건물의 표시]

경기 가평군 동[도로명주소] 경기 가평군

벽돌구조 경사지붕 단층주택

1층 38.03 m²

[토지의 표시]

경기 가평군

대

744 m²

[토지의 표시]

경지 가량군

대

34 m²

[토지의 표시]

경지 가량군

대

177 m²

[토지의 표시]

경지 가량군

대

144 m²

